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4 선고 2022가단52049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고선철

2. C

변 론 종 결 2022. 10. 24.

판 결 선 고 2022. 11. 14.

주 문

1. 김포시 D 임야 5709㎡에 관하여, 피고 B와 E 사이에 2017. 11.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C와 E 사이에 2019.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E에게, 김포시 D 임야 5709㎡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103278호로 마친,
나.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12. 5. 접수 제9890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7656호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20. 6. 19. E 등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E으로 하여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금액의 원금은 최소 38,360,000원부터 최대 210,620,000원까지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위 판결에 따른 E에 대한 각 채권은 모두 2017. 1. 3. 이전에 발생하였다.

다. E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김포시 D 임야 5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7.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9. 12. 4.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12. 27. 접수 제103278호로 위 2017. 11.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9. 12. 5. 접수 제98908호로 위 2009. 1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O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O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E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E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에 대하여 68억 7,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E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올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과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E에 대하여 68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이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선 정 자 명 단

- 1. A
- 2. F
- 3. G
- 4. H
- 5. I
- 6. J
- 7. K
- 8. L
- 9. M
- 10. N. 끝.

